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5.1.31. 개정, 2025.8.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치요구 등의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2)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

나.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계사유 규정(안 제1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재정계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① 법령

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를 재징계사유로 명시함

다. 징계관련 자료 제공 방법 등(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징계 등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합신고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공 시 관련자들이 개인정보 등을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라. 징계 요구를 위한 기준 등(안 제18조의6, 별표 4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요구를 할 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함(별표4의3)

마.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18조의10, 제18조의11의 신설)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척,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바.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안 제18조의12, 별표 4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불이행 행위와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정함(별표 4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월 중)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제18조의13 및 제18조의14로, 제18조의6을 제18조의15로 하고,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시정사항과 기한을 포함한다)를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재징계요구 요건)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은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이를 제공받은 체육단체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 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별표 4의3의 징계요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등)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이의신청심의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둔다.

③ 위원은 인권 분야, 스포츠(장애인 체육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 법률 및 회계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스포츠윤리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의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
2.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3.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출석 심문 실시
4.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문서 작성

⑧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소속 직원이나 조사 담당자, 사건 당사자 등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조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사유와 함께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심의결과 통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이 복잡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 관련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3. 위원회 구성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⑬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이의신청심의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9(이의신청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의10(이의신청심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8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8조의11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8조의11(이의신청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2(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4의4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3]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 기준(제1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경중,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요구의 정도를 판단한다.
-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징계를 요구한다.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요구한다.
- 라. 징계 요구의 대상은 체육지도자, 선수, 심판, 체육단체 임원, 선수관리 담당자, 그 밖에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요구 기준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한다. 동일한 행위가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세부 유형	징계요구 기준
1) 금품수수, 횡령, 배임	제명, 파면, 해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출전정지, 강등, 감봉
2) 권한남용	제명, 파면, 해임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출전정지, 강등, 감봉, 견책
3) 직무태만	제명, 파면, 해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출전정지, 강등, 감봉, 견책

나. 스포츠 비리 및 공정성 침해 행위

세부 유형	징계요구 기준
1) 승부조작, 편파판정	제명, 파면, 해임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명, 파면, 해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체육 관련 입시비리	제명, 파면, 해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불법적인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제명, 파면, 해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다. 인권침해 행위

세부 유형	징계요구 기준	
1) 폭력, 아동학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제명, 파면, 해임
	비위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 하의 출전정지
2) 성폭력	제명, 파면, 해임	
3) 성추행, 성희롱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중대 한 경우	제명, 파면, 해임
	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다) 반복적인 경우 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 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4)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 림 행위	상습적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 정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5) 그 밖의 인권침해 행 위	상습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라.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세부 유형	징계요구 기준
1) 개인 또는 단체에 중 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명, 파면, 해임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파면, 해임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음주운전 등	제명, 파면, 해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출전정지
4) 음주소란 행위	5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출전정지, 강등, 감봉, 견책

[별표 4의4]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한(제18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불이행 횟수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기준은 해당 체육단체가 법 제18조의9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안에 대해 불이행 행위를 반복한 경우 누적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과 그 통지 후 다시 같은 불이행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정지원 중단·배제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은 이전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불이행의 원인이 부주의나 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2) 해당 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불이행의 동기, 행위의 경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치 요구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2. 개별기준의 행위가 처음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2차 불이행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 2. 개별기준의 행위가 4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3차 불이행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위	근거 법조문	기준		
		1차 불이행	2차 불이행	3차 불이행
가.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	법 제18조의9제2항	6개월	1년	2년
나.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	법 제18조의9제2항	경고	6개월	1년
다.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	법 제18조의9제3항	경고	6개월	1년
라.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재조치요구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 (이 경우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재정계요구는 제외한다)	법 제18조의9제3항	6개월	1년	2년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재정계요구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	법 제18조의9제3항	1년	2년	2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시정사항과 기한을 포함한다)를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u> <u>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u>
<신설>	제18조의4(재징계요구 요건)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징계

<신설>

<신설>

<신설>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은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이를 제공받은 체육단체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 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별표 4의3의 징계요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회 등의 구성 등) ① 이의신청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둔다.

② 위원은 인권 분야, 스포츠(장애인 스포츠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 법률 및 회계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소속 직원이나 조사 담당자, 사건 당사자 등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관계 기관,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신 설>

조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이의신청심의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신 설>

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9(이의신청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신 설>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의10(이의신청심의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u> <u>1. 제18조의8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3. 제18조의11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u>
<u><신 설></u>	<u>제18조의11(이의신청심의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18조의12(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4의4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u>
<u>제18조의3 · 제18조의4 (생 략)</u>	<u>제18조의13 · 제18조의14 (현행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와 같음)</u>
<u>제18조의6 (생 략)</u>	<u>제18조의15 (현행 제18조의6과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3193